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63호 / 11월 14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증권시장 개방

1. 개요

- 지난 11월 7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와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해외기관투자자(QFII)¹⁾의 국내증권투자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기로 함.
- 이에 따라 해외 투자기관의 중국 증권투자가 비록 간접 방식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허용되었는바,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중순 戴相龍 인민은행장이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금번 조치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금후로도 점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 간접투자도 점차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1)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는 중국 금융감독관리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해외기관투자자를 지칭하며, 중국은 이들이 일정한도의 자금을 들여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임.

2. 《역외기관투자가의 국내증권투자에 관한 잠정규정》의 주요 내용

□ 중국 證監委는 해외 기관투자가의 국내 증권시장투자와 관련하여 ‘기준을 통과한 해외기관투자가’의 개념, 신청자격 등을 제시함.

- 국내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소위 ‘기준을 통과한 해외기관투자가’란 본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고 증감위의 기준을 거쳐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의 한도액 기준을 획득한 중국해외기금관리기구,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기타 자산관리기구를 의미함.

- 본 규정에 의하면 국내시장 투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o 첫째, 신청인의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신용이 양호하며, 규정한도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추어야 함.

o 둘째, 신청인의 종업원은 소재국가나 지역의 유관업종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함.

o 셋째, 신청인은 건전한 관리시스템과 완비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경영행위가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소재국가나 지역 감독기구로부터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

o 넷째, 신청인의 소재국가나 지역은 완비된 법률과 감독제도를 갖추어야 함. 또한 해당 증권감독기구는 증감위와 감독협력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효율적인 감독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 본 규정은 중장기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폐쇄형 펀드나 기타시장에서 양호한 투자기록이 있는 양로기금, 보험기금, 뮤추얼펀드의 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함.

o 또한 신청인은 증감위의 기준을 거쳐 증권투자업무 허가증을 취득한 후 위탁인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에 투자액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내시장에서 영업이 허가된 해외 기관투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영

업이 허용됨.

- 해외 기관투자자는 국내상업은행에 위탁하여 위탁인으로서 자산을 관리하며,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거래를 해야 함.
- 또한 투자자는 비준된 투자한도 내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하는 주식 중 국내에 상장한 외자기업 이외의 주식,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하는 국채,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하는 전환채권과 기업채권 및 증감위가 비준한 기타 금융상품 등 인민폐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합격된 투자자는 국내에 설립된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국내증권투자관리를 할 수 있음.
- o 한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은 20%를 넘을 수 없음.

3. 증권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 ☐ 중국이 증권시장의 개방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외환보유고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금융개혁 등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기초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5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자본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또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 그러나 금변 조치는 여전히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증권시장에 외국인투자가 대규모로 집중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 첫째, 금변 조치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시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 범위와 비율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둘째, 증감위가 해외자금의 증시교란을 막기 위해 진입된 해외자금의 유출제한 기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셋째, 현재 중국 증권시장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비록 잠재력은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게 큰 매력이 없음.
- 넷째, 중국 상장기업의 투명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도 외국인투자의 장해 요인임.

□ 따라서 금번 조치는 실물경제 수준에서의 효과보다는 WTO 가입 이후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첫 단계 조치의 성격이 강하며, 향후 단계적인 개방조치 실시와 함께 자본시장의 개방이 심화되면서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